

창원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나514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나51403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 8 선고 2018가단3198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이항영

피고, 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진욱

변론 종결2020. 5. 22.

판결 선고2020. 6. 19.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 8. 선고 2018가단319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867,000원¹⁾과 이에 대하여 2016.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867,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울산 남구 D 외 2필지 지상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1992. 3. 16. 위 아파트에 관하여 1990. 6.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3. 8.경 이민을 위해 뉴질랜드로 출국하게 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2004년 무렵에도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의 처형 G은 2005. 6.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6.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H은 2016. 4.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4.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1990.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피고가 1992. 3.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5. 7.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다. 피고는 2005. 6. 14. 피고의 처형 G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의 1/2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같은 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16. 4. 16.경 H에게 매매대금 239,0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매도하고, 2016. 4. 28. H에게 2016. 4.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지위에 있으면서 1995. 7. 1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양수하였고, 그 후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H에게 매도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G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지만, H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가액반환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으로, 예비적으로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H에게 매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H이 지급한 매매대금 239,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992. 3. 16.자 I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8,000,000원 합계 28,000,000원을 공제한 211,000,000원의 1/2인 105,500,000원에서, 원고가 1995. 12. 1.경 피고로부터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5,000,000원을 제외한 100,500,000원의 일부로서 97,86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인 1990. 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96. 7. 1.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가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데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후 이를 처분한 행위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실명법 시행(1995. 7. 1.)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피고는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가 주장하는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제3자인 G,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2 지분 자체를 반환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에게 1/2 지분의 가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등 참고),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경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 1996. 7. 1.부터 10년의 기간이 훨씬 경과한 2018. 7. 25.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원고는 위 시효의 기산점은 H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경과 당시 이미 피고에 대하여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또는 그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당시 그 권리의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1992. 3.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에 기초하여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피고는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이 경과된 1996. 7.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어서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원고의 승낙이 없더라도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의 승낙 없이 이를 G 또는 H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상익

판사강진명

판사이병호

- 1) 원고는 2020. 2. 10.자 준비서면에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500,000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별도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바는 없다.
- 2)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H에 대한 2016. 4. 16.자 처분 또는 G에 대한 2005. 6. 14.자 처분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①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은행 업무지원센터, K은행 업무혁신본부, L조합 M지점, L조합 세솔지점, N은행 수신업무센터, O단체 상호금융IT개발부, O단체 IT상호금융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가 2005. 6. 14. G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 시점이 H에 대한 2016. 4. 16.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② G에 대한 2005. 6. 14.자 처분에 따른 정산금의 산정을 위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2018. 7.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위 정산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제1심법원이 적절히 실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